

# 서울특별시 해방촌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

의안 번호	1483
----------	------

제출년월일 : 2016년 10월 31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 1. 제안이유

가. 주거환경이 열악한 해방촌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등에 의거 사전 시의회에 관련내용 보고·의견을 수렴하여,

나. 이를 본 계획(안)에 반영하여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함으로서 해방촌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다. 그간의 추진경위

- '15. 3. 10 : 주민설명회
- '15. 3. 11 : 해방촌 도시재생지원센터 개소
- '15. 3. 31 : 해방촌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임원선출 및 출범
- '15. 4. 29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지원 신청
- '15. 9.12 : 해방촌 도시재생 주민축제(토요놀이마당) 개최
- '15.12. 3 :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창립총회
- '15.12. 3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주민설명회 개최
- '15.12.31 : 도시재생사업 공모 사업지 선정
- '16. 2.29 : 국토부 제1차 관문심사 통과
- '16. 6.30 : 국토부 제2차 관문심사 통과
- '16. 7.13 : 관문심사 결과 통보
- '16. 7.25 : 해방촌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공동협력 협약  
(서울특별시, 동국대학교, 해방촌 주민협의체, 용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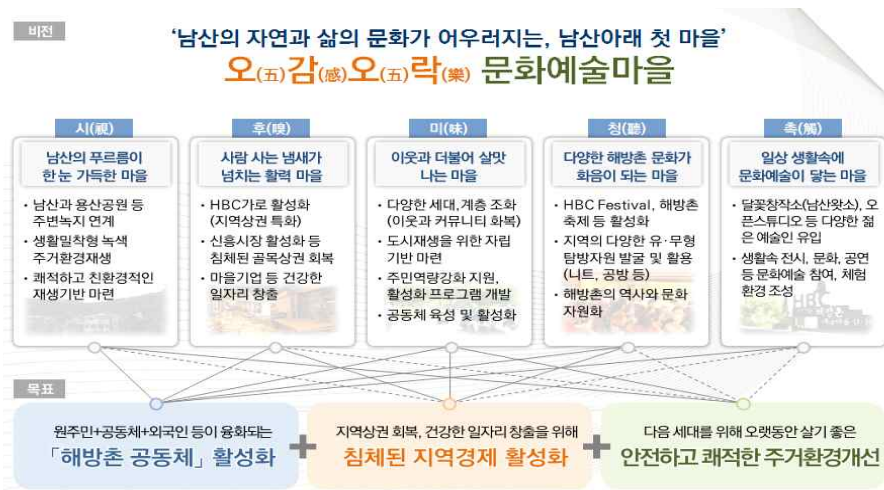
## 2. 주요내용

### 추진방향

#### ○ 사업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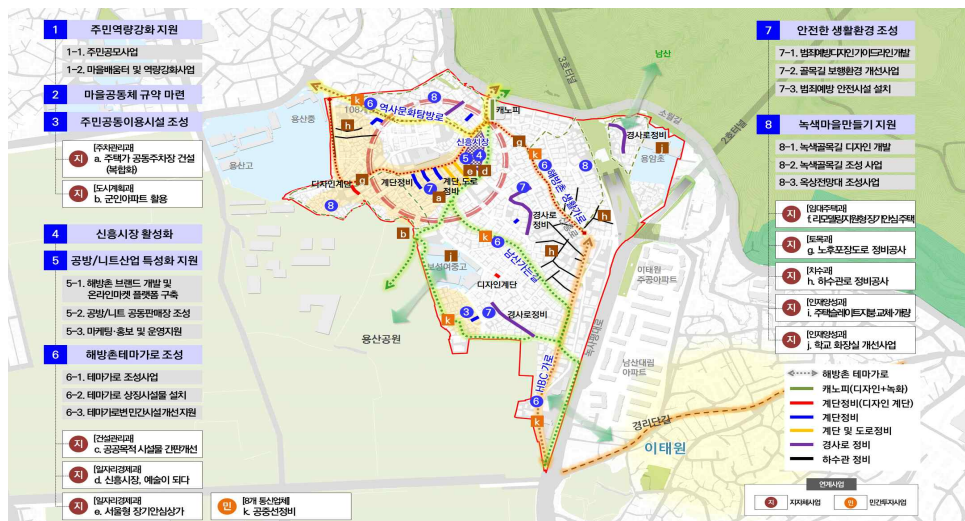
남산주변에 위치하여 쾌적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으나 고도제한 등으로 인해 주거환경 정비가 미흡한 해방촌의 물리적, 사회적·경제적 재생 추진

○ 비전 및 목표



□ 사업개요

- 위 치 : 용산구 용산2가동 일원(면적 332,000m<sup>2</sup>)
- 인 구 : 13,106 명(5,776세대)  
 ※ 외국인 인구 1,304명(10%) : 미국인, 나이지리아인 순
- 사업기간 : 2014.12 ~ 2020.12월
- 사 업 비 : 100억원(국비 50억원 포함)  
 - 2016년 예산 : 3,244백만원(시비 3,126백만원, 국비 118백만원)
- 주요내용
  - 공동체활성화 사업
    - 주민역량강화 지원,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마을공동체규약 마련
  -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 신흥시장 활성화, 공방/니트산업 특성화 지원, 해방촌 테마가로 조성
  - 주거환경개선사업
    -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녹색마을만들기 지원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 도시재생사업 추진전략

- 다양한 공동체와 인적자원을 활용한 지역 공동체문화 활성화 기반 조성
- 지역에 유입되는 문화예술인, 청년창업가 등을 위한 창작공간 조성 및 지역산업 특성화 지원
-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디자인이 고려된 녹색디자인 환경 조성 및 취약지역 정비

목표	원주민+공동체+외국인등이 융화되는 「해방촌 공동체」 활성화	지역상권 회복, 건강한일자리 창출을위해 <b>집체된 지역경제 활성화</b>	다음 세대를 위해 오랫동안살기좋은 <b>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개선</b>
지역 특성 · 자원	29개 직능단체, 15개 공동체 활동 활발	예술공방(33개) 지속적증가, 니트산업 명맥유지(높은 자부심과 의지)	남산, 용산공원 등 도심속 대규모 자연환경 연결
	다양한 마을축제 (해방촌축제, HBC Festival)	젊은 사회적경제조직(37개)의 경험과 노하우	보행환경, 교통체계, 주차체계 개선 필요
	보성여중고교, 용암도서관 등 지역기관의 적극적 사업 참여	동국대학교(MOU) 프로그램 개발 (청년창업, 평생교육 등)	경사지, 계단 등의 수직이동과 골목길 개선 필요
	다양한 세대, 계층, 국적인의 조화로운 상생환경 조성 공감대 형성	길을 따라 역사문화 자원 (108계단, 신흥시장, 신사터 등)보유	투자목적으로 방치된 공간(39채)
핵심 콘텐트	다양한 공동체와인적자원을 활용한 <b>지역 공동체문화 활성화 기반 조성</b>	유입되는 문화예술인, 청년창업가 등을 위한 <b>창작공간 조성 및 지역산업 특성화 지원</b>	남산,용산공원등 자연과 주거환경이 조화되는 <b>녹색디자인 환경 조성 및 취약지역 정비</b>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및 제20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③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획의 목표
2.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
3.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
4. 공공 및 민간 자원 조달계획
5. 예산 집행 계획
6.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및 점검 계획
7. 제23조에 따른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지역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제1항의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전에, 제2항의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신청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작성자 :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주거재생계획팀 김규만(☎2133-7170)